

분산에너지특화지역 변경·지정해제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요청인	기관명	대표자
	소재지	
	전화	전자우편
요청사항	[] 특화지역 변경 요청 / [] 특화지역 지정해제 요청	
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		
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39조, 제40조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변경(지정해제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(시·도지사)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 (변경 시)	1.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1부. 2.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변경 사유서 1부. 3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(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 4.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.	수수료 없음
첨부서류 (지정해제 시)	1.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1부. 2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사유서 1부. 3.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 4.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.	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 수

→

서류 검토

→

에너지위원회 심의

→

변경(해제)

신청인

처리기관: 산업통상자원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